

# 공공디자인 대상으로서 공공공간의 해석과 적용실태 분석

## Analysis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ctual Condition of Public Space as a Public Design Target

주 저 자 : 채완석 (Chai, Wan Seok) (주)투엔티플러스 부대표  
staff21\_nave@naver.com

공 동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iagnose the phenomenon in which the Public Design Act only applies to facilities, supplies, and visual images, while the ordinance includes public spaces, thereby conflicting with the higher law, and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including public spaces as subjects of public design. Accordingly, the history and structure of laws related to public design were confirmed through the website of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and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of public spaces was analyzed from four perspectives: related laws, subjects of application of ordinances, public design projects, and related fields through prior studies and research mater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 was diagnosed from the perspectives of ambiguity in legal interpretation, limitations in application of ordinances, characteristics of public design projects, and scope of recognition in related fields, and the conclusion was reached that efforts to revise the law are necessary to include public spaces as subjects of public design.

## Keyword

Public design target(공공디자인 대상), Public space(공공공간), Framework act on building(건축기본법)

## 요약

본 연구는 공공디자인법에서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만을 적용 대상으로 정한 반면, 조례는 공공공간 등을 포함함으로써 상위법과 배치되는 현상을 진단하고, 공공공간이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디자인 관련법의 연혁과 구조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와 연구자료를 통해 공공공간 적용실태를 관련법, 조례 적용 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관련 분야의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법 해석의 모호성, 조례 적용의 한계,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의 관점에서 적용실태를 진단할 수 있었으며, 공공공간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2. 공공디자인법과 공공공간

- 2-1. 공공디자인법의 태동
- 2-2.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 3. 공공공간 해석 및 적용 현황

- 3-1. 공공공간 관련법 해석

- 3-2. 공공공간 적용 현황 조사

### 4. 공공공간 적용실태 분석

- 4-1. 법 해석의 모호성
- 4-2. 조례 적용의 한계
- 4-3. 공공공간 사업의 특성
- 4-4.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
- 4-5. 소결

### 5. 결론

### 참고문헌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디자인법)」은 사적 영역으로 분류되던 디자인의 관념을 공공 영역에 편입시켜 공공디자인 개념을 탄생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추진해야 하는 법정 사무가 되는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현행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디자인의 대상을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으로 정한 대상시설 이외에 공공공간, 도시기반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까지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어 상위법과 상충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수립된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추진과제도 법으로 정한 대상 이외의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공공디자인법」 적용 대상의 적합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령에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거나 개념을 확대해석함으로써 공간과 시설물 등과의 조화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법」 해석에 따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이 설치되는 공공공간과의 정합성과 맥락을 고려하고,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공공디자인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 관련법, 조례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추진과제,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현황을 분석하여 공공공간이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될 당위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공디자인법」 개정을 위한 기본 방향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는 현행 법령과 법정계획, 법정사무 중 공공디자인과 공공공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영역으로 범위를 설정하고 진행하였다.

공공디자인 및 공공공간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sup>1)</su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조례에 따라 설치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

원회 심의·자문대상 및 관련 부서 협의 대상을 검토하였다.

또한, 공공디자인 분야의 국가계획인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참조하였고, 공공디자인 전담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개인정보가 제외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현황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공간에 대한 해석과 적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결론에 도달하였다.

# 2. 공공디자인법과 공공공간

## 2-1. 공공디자인법의 태동

### 2-1-1. 공공디자인 개념의 출현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국가와 도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지역 환경디자인 개선 노력이 공공디자인 정책으로 구현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1] 안홀트(Anholt)의 도시 브랜드 육각형 모델

이 무렵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인 'Hi Seoul'을 개발하면서 전국으로 공공디자인 개념이 급격하게 파급되었으며, 2005년 12월 8일 국회에서는 여야의원 28여 명이 '공공디자인 문화포럼' 창립 행사를 갖고, 공공디자인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5.7.). URL: <https://www.law.go.kr/LSW/main.html>

2) 도시 브랜드(City Brand)는 지역의 소프트 파워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사용되며, 세계 도시 브랜드 측정 지수로 사용되는 안홀트 도시 브랜드 지수(Anholt City Brand Index)의 육각형 모델은 도시 브랜드를 구성하는 6가지 요소 중 물리적 경관과 이미지를 하나의 구성 요소로 삼고 있음.

브랜드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자는 연구모임을 시작했다. 또한, 2005년 12월 창립한 한국공공디자인학회에서는 2006년 8월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공공디자인 영역을 발표했다.[표 1] 공공공간디자인, 공공시설물디자인, 공공매체디자인, 공공디자인정책이라는 4개의 분류체계는 훗날 조금씩 변화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제시되었지만,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와 같은 영역 분류체계의 효시가 된 점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sup>3)</sup>

**[표 1] 한국공공디자인학회의 '공공디자인의 영역'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공공공간디자인 (Public Space Design)	도시환경	야외공공공간계
		기반시설공간계
	공공건축 및 실내환경	행정공간계
		문화/복지공간계
		역사시설공간계
교육/연구공간계		
공공시설물디자인 (Public Facility and Product Design)	교통시설	보행시설물계
		운송시설물계
	편의시설	휴게시설물계
		위생시설물계
		판매시설물계
	공급시설	관리시설물계
		정보시설물계
행정시설물계		
공공매체디자인 (Public Communication Design)	정보매체	지시/유도기능매체계
		광고기능매체계
	상징매체	행정기능매체계
		유통기능매체계
환경연출매체계		
공공디자인정책	행정 및 정책계	
	관련법규계	

### 2-1-2. 공공디자인 관련 입법 활동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롯되었다. 2006년 현행 공공디자인 조례의 전신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고, 제정 초기 조례 [별표]로 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로 규정하였으며, 2010년에 공공건축물과 광장, 공원이 심의대상 시설물로 포함되었다.

3) 최성호, 한국 공공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2021, Vol.01, No.1, pp.47-48.

서울시의 조례 제정을 통해 촉발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공공디자인법」 제정 이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약 58.8%,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약 39.4%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sup>4)</sup>하였으며, 대부분 심의·자문대상으로 공공공간, 도시기반시설물, 공공건축물, 가로시설물, 정보매체를 반영하였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에서 디자인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담론이 증가하면서 「공공디자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2006년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법안’까지 입법 활동이 계속되었으나, 대부분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표 2] 공공디자인 관련법 입법 현황<sup>5)</sup>**

의안명(대표발의)	의안일	공공디자인의 정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박찬숙 의원) *임기만료폐기	2006. 11.8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전여옥 의원) *임기만료폐기	2009. 9.11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디자인 중 공공기관이 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법안 (이종훈 의원) *수정가결	2015. 6.1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b>공적 공간</b> 및 그 시설물, 공용용품, 공공서비스, 국가 및 지역의 이미지 등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그러나 공공디자인과 관련성이 깊은 건축, 경관 분야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공적 공간”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경관법」 등에서 이미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법률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함으로써 공공공간의 개념인 공적 공간이 제외된 채 이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법안’이 [표 3]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5.13.). URL: <https://www.law.go.kr/LSW/main.html> 중 자치법규의 연혁 현황을 토대로 작성함.

5) 의안정보시스템. (2024.7.30.). URL: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표 3] 공공디자인문화 진흥 법안 수정안 조문 대비

원안	수정안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적 공간 및 그 시설물, 공용용품, 공공서비스, 국가 및 지역의 이미지 등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 -----

## 2-2.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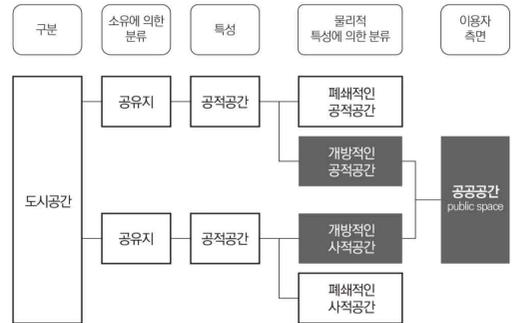
공공공간은 도로, 보도, 공원, 공개공지, 공공시설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시공간을 말하며, 안전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 만남, 이벤트 등 다양한 형태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공생활을 담는 개방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한다.<sup>6)</sup> 한편 공공공간은 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공유지와 사유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유지는 도로나 공원 등 소유권이 공공에 있는 반면, 사유지는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소유의 관점에서 사유지라 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공공공간이라 정의할 수 있다.<sup>7)</sup>

공공공간의 개념 정립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상민 외(2007)은 길이나 광장과 같은 외부공간 뿐만 아니라 필지 내의 오픈스페이스와 건물 내부의 공간까지도 포함하며, 소유의 측면에서 사유공간이라 할지라도 이용 측면에서 공공이 사용된다면 공공공간이라 정의<sup>8)</sup>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공공공간은 [그림 2]와 같이 길이나 광장과 같은 개방적인 공적공간은 물론 공개공지와 같은 개방적인 사적공간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

- 6) 이윤희 외 1,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생태적 공공성의 디자인특성 분석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2, Vol.12, No.2, p.472.
- 7) 이정형 외 1, 공공공간의 민간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1, Vol.37, No.3, p.174.
- 8) 이상민 외 2,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7, p. i

이나, 본 연구의 분석 틀인 관련법, 공공디자인 조례 심의·자문 대상,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 및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를 고려하여 개방적인 공적공간만을 공공공간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2] 공공공간의 범위

## 3. 공공공간 해석 및 적용 현황

### 3-1. 공공공간 관련법 해석

#### 3-1-1. 국토계획법

국토를 다루는 법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된 2003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고 제정되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이 난개발 등 국토 이용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토이용체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제정된 바, 국토를 용도로 구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 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정책 방향을 포함시켜야 하는 규정 이외에 공공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법 제2조 제6호에서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정의하고, 이 중 광장·공원·녹지 등을 공간시설로 분류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유원지와 공공공지까지 포함하여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를 공간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 3-1-2. 경관법

「경관법」은 국토경관관리를 위해 「국토계획법」, 「건축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어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07년 5월 제정되었다.

이후 인구 1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경관계획에 포함하도록 임의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을 경관협정 체결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개발사업 중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등 주요 경관 요소를 통한 도시공간 구조의 입체적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 이외에 공공공간과 관련된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 3-1-3. 건축기본법

「건축기본법」은 건축 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sup>9)</sup>하려는 차원에서 2008년 6월 제정되었다.

「건축기본법」 제3조 각호로 건축물, 공공환경, 공공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이 중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공간환경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공공공간을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정의함으로써 국가 법령 중 유일하게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1조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을 제외한 건축디자인 기준과 문화체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함에는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설계 발주방식을 결정하도록 규정<sup>10)</sup>하고 있다.

9)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7.8.). URL: <https://www.law.go.kr/LSW/main.html>의 「건축기본법」 제정 이유를 참조함.

10)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표 4] 관련법의 공공공간 개념과 대상시설

관련법	대상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간시설	광장(교통, 일반, 경관, 지하, 건축물부설),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경관법	-	-
건축기본법	공공공간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 3-2. 공공공간 적용 현황 조사

### 3-2-1. 공공디자인 조례 심의·자문대상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 17개, 기초 196개 등 총 21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운영 중이다. 이 중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20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현행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정의한 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를 포함한 경우는 각각 100.0%, 58.6%, 88.7%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디자인법」의 해석에 따라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공공공간이 87.7%, 도시기반시설물이 88.7%, 공공건축물이 6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조형물도 74.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지방자치단체 조례 심의·자문대상

공공공간	도시기반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용품	공공시각이미지	공공조형물
178개	179개	136개	203개	119개	180개	152개
87.7%	88.2%	67.0%	100.0%	58.6%	88.7%	74.9%

### 3-2-2. 공공디자인 사업

「공공디자인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5대 추진전략 과제<sup>11)</sup> 49개 중 시민참여, 인식개선, 전문인력 역량 강화, R&D 활성화, 관리 및 검수체계 개선 등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한 비예산 사업과제 12개를 제외한 37개 사업 분석 결과, [표 6]과 같이 공공시각이미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전체의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이 각각 36.9%, 21.5%로 나타나 공공공간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017호) 제23조를 참조함.

1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 p.12.

[표 6]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추진과제 분석

사업명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 이미지	공공용품
1-1-1.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시범적용	●	●	●	
1-1-2.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	●	●	
1-1-3.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	●	●	
1-2-1.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및 시범적용	●	●	●	
1-2-2.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및 시범적용	●	●	●	
1-3-1. 재난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디자인 보급	●			●
2-1-1.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 조성	●	●		
2-1-2. 모든 이를 위한 열린관광지 조성	●	●	●	
2-2-1. 장애인을 위한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	
2-2-2. 고령자를 위한 인지건강 디자인 및 시범적용	●		●	
2-3-1. 고령자·시각장애인 이용이 편한 행정 웹사이트 개선			●	
2-3-2. 작성자 중심의 간소화된 행정서식 개발 및 보급			●	
3-1-1. 통합형 보행자 길 찾기 시스템 디자인 및 시범조성	●	●	●	
3-1-2. 도로표지판 디자인 개선보급		●	●	
3-1-3. 도로 색깔유도선 디자인 보급	●		●	
3-1-4. 광역철도/ 지하철 노선도 디자인			●	
3-1-5. 전문상점가로 활성화를 위한 안내체계 디자인		●	●	
3-2-1. 지하공간 안내체계 개선 디자인			●	
3-2-2. 버스환승센터 플랫폼 통합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		●	●	
3-2-3. 터미널 안내체계 개발	●		●	
3-3-1. 대형 체육시설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보급	●		●	
3-3-2. 탐방로 안내체계 디자인 개발			●	
3-3-3.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	
3-4-1.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보건소 실내 공간디자인	●			
3-4-2. 문화예술공간의 청소용품 등 디자인 및 보급				●
4-1-1. 동마을 단위 시각이미지 디자인 및 시범조성	●		●	
4-1-2. 주민들이 행복한 주거공간 디자인	●			
4-1-3.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가이드라인	●			
4-2-1. 도시 주요 공간 공공시설물 통합 개선	●	●		
4-2-2. 지자체 접경 지역 공공시설물 공동개발 및 설치	●	●		
4-2-3. 지역축제 공간과 시설물 개선 공공디자인	●	●		
4-3-1. 쌈지공원, 노후 어린이공원 활성화 디자인 개선	●			
4-3-2. 공개공지 연계 이미지 활성화 디자인	●			
4-4-1. 문화관광자원 품격향상 개선 환경조명 디자인	●			
4-5-1. 차세대 여권디자인 개선			●	
4-5-2. 공공시설물 및 안내사인 표준색채 개발 및 보급			●	
4-5-3. 공공디자인 시각기호(픽토그램) 개발 및 적용			●	
계(37개)	24개 (36.9%)	14개 (21.5%)	25개 (38.5%)	2개 (3.1%)

### 3-2-3.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공공디자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정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에서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에서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심사하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 제공한 자료<sup>12)</sup>에 따르면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승인된 583명의 최종학력 상 전공 분야는 디자인이 5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공간과 관계된 분야인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 비율의 합도 25.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전공 분야

도시 계획	건축 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	비전공
30명	61명	341명	21명	56명	74명
5.1%	10.5%	58.5%	3.6%	9.6%	12.7%

\*조사 범위 : 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1년)

## 4. 공공공간 적용실태 분석

### 4-1. 법 해석의 모호성

공공디자인 관련법 중 공공공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두고 있는 법은 「건축기본법」 밖에 없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은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건축정책의 수립·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기본법으로, 기본법의 특성상 개별법으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건축정책 세부분야별로 신규 법령들이 제정되었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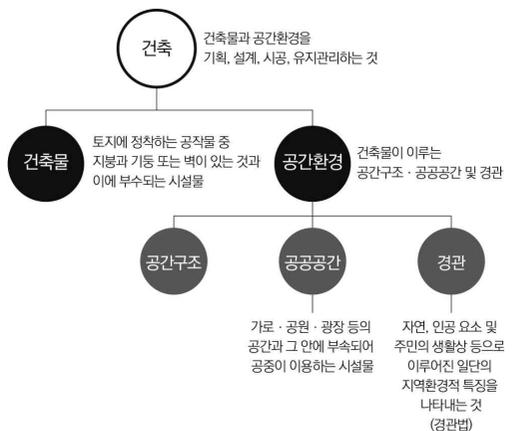
따라서 「건축기본법」은 그동안 건축의 모범 역할을 수행해 온 「건축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축정책을 계획적·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건축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축법」에

서 정의한 건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토지 내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려는 행위<sup>14)</sup>를 말하는 반면,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한 건축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건축법」과 「건축기본법」의 용어 정의에서 개념적 차이가 발생한다.

[표 8] 건축 용어의 정의

법률명	용어의 정의
건축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건축기본법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 *공간환경 :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 *공공공간 :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즉, 「건축기본법」에서 정의한 건축은 인간적 요구와 건축재료에 의해 실용적·미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조물과 부속 시설물, 무형의 영역, 비물리적 이미지까지 지칭하는 개념으로 과도한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그림 3] 건축기본법의 건축 개념

12)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현황 자료의 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함.

13) 김영현 외 4,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2, p.2.

14)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7.12.). URL: <https://www.law.go.kr/LSW/main.html>의 「건축법」 제2조를 참고함.

다만, 「건축기본법」 제21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은 민간전문가<sup>15)</sup>의 역할과 업무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발주방식 등을 주요 내용을 두고 있어 공공공간에 동 기준을 적용하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건축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경우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7개(100.0%) 모두 제정한 반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10개(4.4%)에 그치고 있으며,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사항, 지역건축위원회에 관한 사항,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공공공간에 대한 구체적 해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행 「건축기본법」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두고 있으나, 확대 해석된 건축의 개념 하위에 공공공간을 두는 것은 법 해석이 과도하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위계와 달라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 4-2. 조례 적용의 한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따라 행사하는 법규범 중 하나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현행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가목부터 사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그 이외 범주를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간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등’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실효적 관점으로 공공의 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

15)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7.12.). URL: <https://www.law.go.kr/LSW/main.html>의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함.

16)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7.12.). URL: <https://www.law.go.kr/LSW/main.html>의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별 조례의 제정, 위원회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하여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약칭, 통합 조례)’<sup>17)</sup>를 배포하였다.

통합 조례를 보면 [표 9]와 같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을 사회기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물로 구분하고, 심의대상 공공시설물의 색채, 재질, 조형 등 디자인 요소와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보매체, 시설물은 물론 공간, 지역, 프로그램까지 검토하여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9] 통합 조례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구분	대상		
공공 시설물	사회기반 시설	도로시설물	교량, 자전거도로, 맨홀 등
		도시철도시설	지하철출입구, 안내표지판, 환기구, 엘리베이터 등
		하천시설물	육갑문, 제외지 구조물
		전원설비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기타 공공 시설물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우체통, 전신주 등
		정보통신망	교통량감지기 등
		문화관광시설	관광안내소, 안내표지판 등
		가로녹지시설	가로수 보호덮개, 벽천 등
		환경관리시설	휴식통, 공중화장실 등
공공 디자인 사업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교통관련시설	보행자 안내표지, 정류소, 횡단보도 횡단, 블라드 등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사설안내표지, 가로판매대, 고가하부 공원 등
		기타	버스, 관용차, 광장, 공원 등

17) 통합형 조례는 공공디자인과 상위 법령이 없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을 통합한 권장형과 개별 장으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권장형과 일반형 모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시설물과 공공디자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보매체, 시설물, 공간, 지역, 프로그램 등
범용(유니버설)디자인	

이와 같이 통합 조례의 보급에 따라 「공공디자인법」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물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공공간을 공공디자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비율이 87.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공공디자인 조례에 ‘공공공간’ 용어를 정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와 강북구, 종로구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용어의 정의에서 공공디자인을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서울특별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이 중 공공공간을 「건축기본법」 제3조 제3호와 같이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임에도 공공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대부분인 공공디자인 영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공공디자인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 4-3.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

공공공간은 도시를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로 불특정 다수 국민의 일상을 담아내는 개방된 공간이다. 공공공간이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기존 건축 관련 법령이 공공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축기본법」에서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의하고, 가로·공원·광장은 국토교통부 예규 및 훈령 등을 통해 설계의 기본 사항과 물리적 제원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공간의 대표적 대상인 보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예규인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편리성 확보를 위해 보도 등 보행자 통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 기준인 물리적 형식과 시설한계<sup>18)</sup>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 시설물간의 정합성 등 디자인 요소에

18) 도로 위에서 차량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함.

관해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시설물 등’으로 해석한 대상시설물이 설치되는 곳은 공간이므로 공공공간에 설치 또는 사용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은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해석·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대부분 단일 시설물이나 용품, 시각 이미지를 설치하는 단순 사업에 비해 공간 내에 시설물과 시각 이미지 등 두 가지 이상의 공공디자인 대상이 상호 맥락을 갖고 조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공간과 개별 시설물과의 정합성과 조화성,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특성이 강하다.

따라서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서 검토한 37개 사업의 36.9%가 공공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공공시설물 등’의 해석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 4-4.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

「건축기본법」에서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를 건축사로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도시계획, 공공디자인 분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던 바와 같이, 「공공디자인법」으로 정한 공공디자인 전문가와 전문인력 모두 디자인 분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공공디자인법 시행령」 [별표]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에서 말하는 관련 분야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로,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 중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분야는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행 「공공디자인법」으로 정한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디자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분야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공간과 관련된 사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며, 전문가의 범위를 특정 분야로 한정하지 않으려는 법 취지와도 부합된다.

따라서 현행 「공공디자인법」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 「건축기본법」과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도시계획, 건축설계, 디자인, 미술, 조경설계 분야의 인력을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문에 공

간을 다루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분야를 고려하여 공공공간이 공공디자인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합리적이다.

#### 4-5. 소결

지금까지 공공공간의 해석과 적용 현황, 적용실태 분석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률을 검토한 결과 「국토계획법」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를 공간시설로 규정하고, 「건축기본법」은 공공공간을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기본법」에서 규정한 건축의 개념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 건축의 개념인 토지 내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려는 행위보다 확대 해석함으로써 인공 구조물과 부속 시설물, 공간과 경관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기획·설계·시공·유지하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공간을 건축의 하위에 두는 개념으로, 통념상 공간적 위계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재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디자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공디자인법」 제2조의 「공공시설물 등의 해석이 통일되지 않아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따르거나 업무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타난 심의·자문대상을 검토한 결과 「공공디자인법」에서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정의한 시설물, 용품, 시각 이미지 이외에 공공공간, 도시기반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치입법권에 따른 조례의 특성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해야 하므로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시설물에 대한 법 용어 해석은 개별 법령의 제정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공시설물 등의 해석에 적극적일 필요성이 있다. 예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은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의 기반시설과 대형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법의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를 규정하는 등 「시설물」의 정의가 산재,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법 해석이다. 결과적으로 타법에서 말하는 시설물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디자인법」에 명시적으로 시설물을 정의한 것이나, 이로 인해 시설물을 공간 안에 부속된 개념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정의한 시설물은 공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용어를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관련계획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검토한 결과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36.9%로 나타나, 공공시설물의 비중인 2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공시설물 등의 대상시설물이 공공공간에 설치 또는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이며, 단일 시설물이나 용품, 시각 이미지를 설치하는 단순 사업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공공디자인 대상이 상호 맥락을 갖고 조성된다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관련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을 위해 공공공간의 개념이 반드시 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를 검토한 결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승인된 사람의 25.2%는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분야인 것으로 나타나 공공공간이 공공디자인의 대상에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현행 「공공디자인법」에서 정한 공공디자인의 대상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를 대상으로 한다면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 분야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으로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현행 「공공디자인법」 해석에 따른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공공공간이 배제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하고, 현 상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공디자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공공디자인 개념의 등장과 관련법 입법 과정을 검토하고, 공공공간이 누락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공공공간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따라 공공공간 관련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심의·자문대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법정계획의 추진과제와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공공공간에 대해 정의를 명확히 두고 있는 「건축기본법」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조물과 부속 시설물, 무형의 영역, 비물리적 이미지까지 건축으로 정의하고 있어 과도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건축의 개념 하위에 공공공간을 두고 있어 일반적인 위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디자인법」에서 정의한 공공디자인 대상 외 범주의 하나인 공공공간은 조례의 특성상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디자인 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공간이 배제된 상황에서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범위는 현행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대상과 비교할 때 공간과 관련된 도시계획, 건축설계, 조경설계 분야와 상충되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공공디자인법」 적용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노출된 공공공간을 공공디자인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효성을 담보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인간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물리적 공간으로 도시 집중화에 따라 교육, 교통, 범죄, 환경 등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국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것은 적용 대상 때문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바탕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의 행복한 삶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고르게 부여하기 때문이며, 사익에 반하여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공공디자인법」은 적용 범위를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사회공동체가 직면하는 각종 공공적 문제 해결과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해석의 관점과 적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공디자인법」 개정에 필요한 기초 현황을 사전에 진단한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영현 외 4, 건축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건축기본법 개정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2.
2. 문화체육관광부 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2020.
3.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
4. 이상민 외 2,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5. 김창휘, '공공디자인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2018, 제81집.
6. 이윤희 외 1,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생태적 공공성의 디자인특성 분석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2, 제12권, 제2호.
7. 이정형 외 1, '공공공간의 민간활용과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21, 3, 제37권, 제3호.
8. 최성호, '한국 공공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 공공디자인연구, 2021, 제1권, 제1호.
9. 이슬기,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민간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0. likms.assembly.go.kr
11. www.law.go.kr
12. www.nkis.re.kr